

1. 의결주문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3년 8월 16일 공포한 개정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과 관련하여 행
안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(제6조의2 신설)

나. 세부사항에 대해 소방청 훈령 위임 규정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1.13 ~ 12. 25.)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)

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1. 환자평가장비
2. 응급처치장비
3. 구급의약품
4. 감염방지장비
5. 활동보조 및 개인보호장비

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)</u> <u>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</u> <u>1. 환자평가장비</u> <u>2. 응급처치장비</u> <u>3. 구급의약품</u> <u>4. 감염방지장비</u> <u>5. 활동보조 및 개인보호장비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</u>